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이철규·권성동·이인선

송언석 • 박정하 • 유상범

구자근・송기헌・허 영

정희용 · 이양수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폐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 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폐
	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
	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
	<u>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u>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